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3730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스틸
피 고	달성군수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3,190,7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4,778,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556,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6. 7. 1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7. 10.'의 오기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취득세등 감면 경위

1) 원고는 철강 및 비철금속류 강판, 파이프류, 배관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유통업 및 각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4. 14.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이하 '자연과환경'이라 한다)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4. 4. 14. 물적분할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2-3 공장용지 13,07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 등 처분

원고는 2015. 3. 16. 주식회사 휴스틸(이하 '휴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838,750,050원(= 토지 3,073,471,000원 + 건물 4,765,279,05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83,875,005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54,875,045원은 2015. 3. 16.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원고의 제조설비를 6,761,249,95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조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휴스틸에 매각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폐지하는 경우'로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5.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53,190,7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556,4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4,778,2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휴스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유형자산매매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회계처리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휴스틸 사이의 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사업양도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고, 다만 휴스틸의 요청으로 그 형식만 개별유형자산의 매매계약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감정가액으로 회계처리된 것도 위와 같이 개별유형자산의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바람에, 사업양도에 따른 영업권가액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영업권가액이 포함된 감정가액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와 휴스틸 사이의 거래는 그 형식과는 달리 실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의 예외사유인 '자산의 포괄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물적분할 등 기업구조재편으로 인하여 법적 형식의 측면에서 소유권의 변동이나 사업주체 및 법인격의 변화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배권의 향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기업이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사업구조를 용이하게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세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신설분할법인이 그 물적분할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한편, 신설분할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고 처분이익을 얻음으로써 그 감면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감면된 취득세등을 다시 추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징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자연과환경은 2014. 3. 24.경 최근 4사업연도에 걸쳐 연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코스닥 시장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자연과환경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4. 4. 14. 물적분할을 통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자연과환경의 물적분할로 인한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다) 자연과환경은 2014. 8.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회사인 원고의 지분을 1년 이내에 매각하여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고, 2014. 10. 27.경 원고의 지분(보통주식 10만 주, 지분율 100%)을 매각대상으로 하는 지분매각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6. 휴스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제조설비 등에 관한 제조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조설비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제조설비 매매계약]

제1조(계약내용) 첨부 설비 리스트 참조[2)]

제2조(기계인도 및 수송)

계약된 기계의 인도 및 수송은 휴스틸의 부담과 책임하에 하며 중장비가 동원되거나 비용이 요구될 때는 휴스틸이 전액 부담한다(공장시설 내 칸막이 판넬 개폐시 원상복구비용 포함). 시운전 후 운송시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휴스틸에 있다.

제3조(결제조건)

장비양도대금: 6,761,249,95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금액(원)	거래조건
계약금	676,124,995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	6,085,124,955	환경 관련 인허가 인증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합계	6,761,249,950	

제7조(권리승계)

1) 휴스틸은 원고의 제조 및 검사 설비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휴스틸은 원고의 각종 규격 및 인증(KS, KC, JIS, ISO)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제조 관련 인력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

마) 자연과환경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종속회사인 원고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2015. 1. 28.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2015. 3. 16. 유형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하였다.

[2015. 1. 28. 영업정지 공시]

○ 영업정지 분야: 스테인레스 강관

○ 영업정지금액: 22,102,390,643원

2) 원고는 위 계약서에 첨부된 설비 리스트는 제출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 영업정지 내용: 스테인레스 강관 제조
○ 영업정지 사유: 적자사업 정리를 위한 공장 및 제조설비 등 매각
○ 향후대책: 당분간 OEM 계약을 통해 기존의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향후 잔여자산 및 지분매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정리할 예정임
○ 영업정지 일자: 2015. 2. 16.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41,614,281,734원

[2015. 3. 16. 유형자산 처분결정 공시]
○ 처분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제조설비 등
○ 처분금액: 14,600,000,000원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처분금액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바) 휴스틸은 2015. 1. 28.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2. 17. '휴스틸이 원고의 영업을 양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원고의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액	매입세액	
2014년 제1기 확정	3,774,794,181	377,479,425	4,009,749,117	400,974,907	-23,495,482
2014년 제2기 예정	3,971,704,066	397,170,399	3,563,852,880	356,385,278	39,707,427
2014년 제2기 확정	4,175,089,209	417,508,932	4,178,578,349	417,857,826	-2,213,770
2015년 제1기 예정	14,969,771,702	1,496,977,174	1,458,569,353	145,856,925	1,349,340,0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2015년 제1기 확정	29,711,811	2,971,181	25,183,811	2,518,388	452,793
2015년 제2기 예정	2,100,000	210,000	51,189,439	5,118,941	-4,908,941
2015년 제2기 확정	2,100,000	210,000	2,858,933	285,889	-75,889
2016년 제1기 예정	-	-	6,018,123	601,810	-601,810
2016년 제2기 확정	-	-	538,992	53,897	-53,897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장부가액은 2,537,248,400원, 거래가액은 3,073,471,000원, 건물의 장부가액은 4,391,765,226원, 거래가액은 4,765,279,050원, 제조설비의 장부가액은 4,361,955,786원, 거래가액은 6,761,249,95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휴스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를 처분한 것을 두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휴스틸과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전반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 제조설비 매매계약과 같은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자연과환경의 2015. 1. 28.자 영업정지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이 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221억 원으로 원고의 자산총액인 약 416억 원의 약 53%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의 거래가액도 합계 146억 원으로 원고의 자산총액의 약 35% 정도에 불과하다. 또 자연과환경은 2015. 3. 16. '사업양도'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유형자산 처분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하였다.

다) (1) 원고는, 제조설비 매매계약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조 및 검사설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제7조 제1항) 원고의 각종 규격 및 인증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제7조 제2항) 제조 관련 인력을 승계하기로 하는 등(제7조 제3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사업목적은 '철강 및 비철금속류 강판, 파이프류, 배관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유통업 및 각 부대사업'인 반면에 제조설비 매매계약의 대상은 설비와 규격·인증에 대한 권리·의무에 불과하여 위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조 관련 인력 외에 가공, 판매·유통 및 부대사업 관련 인력에 관한 승계약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사업양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아닌 개별자산의 처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연과환경의 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및 원고나 자연과환경의 우발부채 승계 여부가 문제되어 휴스틸의 요청으로 지분매각 대신에 부동산 매매계약 및 제조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관한 기존 법리나 상거래의 일반적 경험칙상 선뜻 부합하지 않거나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편법적인 승계절차에 관하여 상법이나 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영업양도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마) 만약 원고와 휴스틸이 정상적인 사업양도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취득세등을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임을 주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고, 휴스틸로서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휴스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향후 사업양도임이 밝혀지면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위험을 부담한다. 휴스틸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산별 처분계약을 통해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합계 397,525,36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등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의 공급으로 인하여 1,153,300,763원(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상 매출세액, 을 제4호증 참조)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휴스틸도 같은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 원고와 휴스틸이 진정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은 행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바) (1) 원고는, 휴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양수를 전제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 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기업결합의 여러 유형 중 제4호가 규정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가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상이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일치하는 개념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원고와 휴스틸 사이의 이 사건 거래를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고 하여 자산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가 장부가액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영업권가액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였고, 자산의 양도를 통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를 감정가액으로 처분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양도된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 외에도 '장부가액에 의한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이는, 합병법인의 설립이 적격합병(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으로 인정될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의제받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고(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합병법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의 특례(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를 받게 되는데,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자산을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그것이 설령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취지이다. 원고가 자연과환경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경위, 즉 물적분할(구 법인세법 제47조)을 통한 분할신설법인 설립의 경우에도 분할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를 받지만,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자산을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단기간 내에 처분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손금에 산입되었던 양도차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감면된 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업구조개편에 따라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만 변경될 뿐 사업의 동일성,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그 자산의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계상된 장부가액과 다른 때에는 자산의 처분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실질적으로 과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보아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고자 함에 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장부가액(합계 11,290,969,412원)과 거래가액(14,600,000,000원)의 차이가 3,309,030,588원에 이르러, 사업주체만 바뀌되 사업의 동일성, 지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보다는 자산의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으로 인한 이익향유의 측면이 실질적으로 부각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의 주장처럼 막연히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휴스틸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처분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 원고는 영업권가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양도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영업권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5)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혜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판사 박상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 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 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분할법인이 제5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 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되거나 재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6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끝.